



제1564호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선 람	기관 의 장

규 칙

- 규 칙 제 1039 호 남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감사실 3
- 규 칙 제 1040 호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 의회사무국 15

공 고

- 공 고 제 1906 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0
- 공 고 제 1924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2
- 공 고 제 1934 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늘솔길근린공원]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24
- 공 고 제 1944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 행사 통보 49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 4 4 호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52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 4 5 호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72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 4 6 호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 법예고 및 의견수렴 85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 4 7 호 「남동구 환경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96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 4 8 호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10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 4 9 호 「남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 건수렴 117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 5 0 호 「남동구 꿈나무스포츠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및 의견수렴 129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 5 1 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42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 5 2 호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163
- 보 건 소 공 고 제 9 2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64

제1564호

남동구 구보

2020. 9. 29. 화요일

고 시

- 고 시 제 152 호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166
- 고 시 제 153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고시 170

회
람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남동구 남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9월 29일

남동구 규칙 제1039호

남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남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내부통제 수단 및 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자치규칙 제·개정
2.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시스템 관리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남동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국장급 공무원,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울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실무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
2. 자기진단 제도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을 수행하는 주요 실무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
3.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예산, 인사, 회계, 세입, 민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청백-e시스템

제6조(청백-e시스템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이하 이 장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업무지정)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전반 관리
- 다.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 라. 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 마.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 바.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 관리

라.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5. 감독책임자

가.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담당자, 조치

일자 및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자기진단 제도

제11조(자기진단)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

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업무지정) 구청장은 자기진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 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 실시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제13조(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제14조(공직윤리활동 운영계획)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부서 단위 비리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제15조(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하 이 장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행정안전부에 시스템의 보급 및 운영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지정)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다. 감사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실무부서의 장은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다만,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3. 지원부서

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5장 보안 및 사후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이며, 총괄 관리 및 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 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 적발 등

2. 자기진단 제도: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률 등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등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확인·점검

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20조(포상 등)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제도지원)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관련 제도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시스템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명칭 변경
 -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변경
- 2020. 1. 1 조직개편 사항 반영, 내부통제위원회 등 정비
 - 국장 및 보건소장 7명 내외
 - ⇒ 국장급 공무원, 감사부서의 장 등 10명 이내(제4조)
- 자율적 내부통제 전산시스템(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과 새울 행정시스템 연계에 따른 감사부서 통보 절차 삭제(제12조, 제16조)
- 제14조의 시책 수립 및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에 대한 중복 조항 삭제(제15조제2항)
- 제17조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복 조항 삭제(제17조제4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공포)

□ 제 명 :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

□ 개정이유

- 남동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정 목적, 견학 정의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 제2조)
- 의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시행,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제5조)
- 견학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제8조)

제26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9.10.)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의 회 의 장 임 애 숙

2020년 09월 29일

남동구의회 규칙 제1040호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남동구민의 자치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남동구의회 견학 관리 대장(제8조 관련)

[illegible]

고 회

남동구 공고 제2020-1906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 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가는 등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0. 9. 25. ~ 10. 8.(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처분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2대(붙임 참조)
4. 보관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386-8번지
5. 처리방법 : 공고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
6. 열람대장 : “ 별 첨 ”
7. 문 의 : 남동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032-453-5646)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대장(2020. 8.)

001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구월동 1335-5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은색
		제조회사명	한국스포츠
		이동보관일	2020. 8. 31.
		보관장소	적환장(도림동 386-8)
002		처리결과	
		발견일시	2020. 7. 30.
		발견장소	구월동 1335-5
		종 류	성인용
		색상/특징	검정색
		제조회사명	삼천리
		이동보관일	2020. 8. 31.
		보관장소	적환장(도림동 386-8)
		처리결과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924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0.9.25. ~ 2020.10.12.
3. 공고대상 : 69어1758외 4대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 (1,2차)	미배달사유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고
1	2020-00245	78나7183	그랜드스타렉스 (GRAND STAREX)	남동구 구월동 1162-45 롯데파크빌 큰성말어린이공원 사이 이면도로	조*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면 양**길 2**-3*	2020.8.5. 2020.8.26.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2020.7.30.	㈜서울폐차 사업소	032-442-6660	
2	2020-00318	34부2902	Passat 2.0 TDI	남동구 석정로 540-1 공업사 뒤편	방*배	충청남도 당진시 전**길 1*-9* 3**호(읍*동, 금****빌)	2020.8.19. 2020.9.8.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2020.8.12.	㈜서울폐차 사업소	032-442-6660	
3	2020-00329	39누7869	무쏘	남동구 경원대로 971 간석홈플러스 2층주차장	김*례	전라남도 나주시 가**길 3* 1**동 5**호(읍*동, 용****트)	2020.8.24. 2020.9.8.	폐문부재 폐문부재	2020.8.14.	㈜서울폐차 사업소	032-442-6660	
4	2020-00332	49모7073	마티즈	남동구 경원대로 971 간석홈플러스 3층주차장	임*식	경상남도 거제시 아**길 1* **7호(아*동)	2020.8.19. 2020.9.8.	폐문부재 폐문부재	2020.8.11.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032-814-4400	
5	2020-00333	73보1392	카스타	남동구 석정로566번길 28 간석육교어린이공원 앞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번길 3*(간*동)	2020.8.19. 2020.9.8.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2020.8.12.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032-814-440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934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늘솔길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늘솔길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늘솔길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 의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면적(㎡)	시설율(%)	면적(㎡)	면적(㎡)	시설율(%)	
변경	늘솔길 근린공원	근린 공원	논현동 738-8	561,641	171,026.22	30.45	561,641	171,241.22	30.49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늘솔길 근린 공원	- 시설물 변경 - 기 정 : 30.45% - 변 경 : 30.49%	생태체험관 건립에 따른 시설면적 증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561,641	100	561,641	100	
소 계	171,026.22	30.45	171,241.22	30.49	
기 반 시 설	39,464	7.02	39,464	7.02	
도 로	27,419	4.88	27,419	4.88	
광 장	12,045	2.14	12,045	2.14	
조 경 시 설	74,275	13.22	74,275	13.22	
휴 양 시 설	3,757	0.67	3,757	0.67	
유 희 시 설	3,000	0.53	3,000	0.53	
운 동 시 설	40,119	7.14	40,119	7.14	
교 양 시 설	836	0.15	1,051	0.19	
편 익 시 설	9,245.22	1.65	9,245.22	1.65	증 215㎡
관 리 시 설	330	0.05	330	0.05	
기 타 시 설					
녹지 및 기타	390,614.78	69.55	390,399.78	69.51	감 215㎡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원녹지과(☎453-6143)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도시계획시설(공원:늘솔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신청서

2020. 09.

인천광역시 남동구

목 차

① 위 치 도

② 입 안 검 토 서

③ 조성계획결정조서

④ 관 련 도 면

① 위 치 도

위 치 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38-8번지



② 입 안 검 토 서

도시계획시설(공원:늘솔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검토서

1. 공원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38-8번지
- 규 모 : 561,641.0 m^2
- 공원종류 : 도시공원(근린공원)
- 공 원 명 : 늘솔길근린공원

2.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현황

- 도시관리계획(공원)최초 결정 : 2006. 05. 08. (인고 제2006-67호)
-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 결정 : 2011. 10. 10. (인고 제2011-331호)
- 공원조성계획(공원)최초 결정 : 2008. 06. 16. (인고 제2008-105호)
- 공원조성계획(공원)변경 결정 : 2016. 06. 13. (인고 제2016-137호)

3. 공원조성계획(변경)검토

- 상정 사유
 - 늘솔길공원 내 다함께나눔길(무장애길), 힐링숲 및 숲속모험놀이터 연계한 생태체험관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 관련(법규)기준 검토

- 공원시설율 : $(171,241.22m^2/561,641.0m^2) \times 100 = 30.49\%$ (법정 40%이하) $\therefore$ 적합

구 분		부지면적 (m^2)	시 설 면 적		법적기준 공원시설	비고
			면적 (m^2)	시설율 (%)		
시 설 율	기 정	561,641	171,026.22	30.45	부지면적의 40%이하	30.49%/40%
	변 경	561,641	171,241.22	30.49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공원건폐율 : $(1,711.07m^2/561,641.0m^2) \times 100 = 0.30\%$ (법정 10.0%이하) $\therefore$ 적합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부지면적 (㎡)	건축면적		부지면적 (㎡)	건축면적		
		바닥 면적 (㎡)	건폐율 (%)		바닥 면적 (㎡)	건폐율 (%)	
건 폐 율	561,641	1,496.07	0.27	561,641	1,711.07	0.30	0.30% 〈 10%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04호)

4. 검토 및 입안부서 의견

가. 법적 검토사항

- 공원시설율 : 30.49% (법정 40%이하)
- 공원건폐율 : 0.30% (법정 10%이하)

나. 입안부서 의견

- 늘솔길공원 내 다함께나눔길(무장애길), 힐링숲 및 숲속모험놀이터 연계한 생태체험관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다. 대상지 현황분석

○ 주변여건

- 대상지는 남동구 논현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논현택지(주택지)와 남동공단(공장지역)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음
- 주택지 인근에 위치한 공원으로 자연산림의 수림을 형성하고 있으며 공원 내 양떼목장 및 호수가 있어 주말 이용객이 많음

【 대상지 현황사진 】



○ 대상지현황

- 편백나무 숲은 자연의 수림형태로 양호한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메타세콰이어 숲은 인위적인 배식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밀식·열식에 의한 특이경관을 연출하고 있음
- 숲속모험놀이터 내 각종 놀이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자연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대상지 현황사진 】



① 생태학습관위치



② 메타세콰이어숲



③ 숲속모험놀이터



마. 절차이행 검토

구 분	이행여부	관련법률	비고
환경영향평가	X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시행령31조	해당사항 없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X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시행령6조	해당사항 없음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수립	X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시행령 13조의 2,3	해당사항 없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2항	해당사항 없음
매장문화재지표조사	X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제6조	해당사항 없음
도시공원위원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주민의견청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13조	
공원시설 및 건폐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등	적합 시설율:30.40% (40%이하) 건폐율:0.30% (10%이하)

○ 국·공유지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③ 조성계획결정조서

가. 총괄표

나. 시설조서

다. 도로조서

도시계획시설(공원:늘솔길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38-8번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계			561,641	171,026.22	5	1,436.07	4,536.87	605	561,641	171,241.22	6	1,711.07	4,966.87	605	시설면적 증 215.0㎡ 바닥면적 증 215.0㎡ 연면적 증 430.0㎡
공 원 시 설	시 설 계		171,026.22	171,026.22	-	-	-	-	171,241.22	171,241.22	-	-	-	-	증 215.0㎡
	기 반 시 설	소계	39,464	39,464	-	-	-	-	39,464	39,464	-	-	-	-	-
		도로	27,419	27,419	-	-	-	-	27,419	27,419	-	-	-	-	-
		광장	12,045	12,045	-	-	-	-	12,045	12,045	-	-	-	-	-
	조경시설		74,275	74,275	-	-	-	-	74,275	74,275	-	-	-	-	-
	휴양시설		3,757	3,757	-	-	-	93	3,757	3,757	-	-	-	93	-
	유희시설		3,000	3,000	-	-	-	8	3,000	3,000	-	-	-	8	-
	운동시설		40,119	40,119	1	1,243.05	4,233.35	4	40,119	40,119	1	1,243.05	4,233.35	4	-
	교양시설		836	836	-	-	-	-	1,051	1,051	1	215.0	430.0	-	증 215.0㎡ 바닥면적 증 215.0㎡ 연면적 증 430.0㎡
	편익시설		9,245.22	9,245.22	2	113.22	113.22	-	9,245.22	9,245.22	2	113.22	113.22	-	-
	관리시설		330	330	2	139.8	139.8	500	330	330	2	139.8	139.8	500	-
	도시농업시설		-	-	-	-	-	-	-	-	-	-	-	-	-
	녹지 / 기타			390,614.78	-	-	-	-	-	390,399.78	-	-	-	-	-
시설율(%) (법정 40% 이하)			· 시설율 : 30.45% 녹지율 : 69.55% · 건폐율 : 0.27%					· 시설율 : 30.49% 녹지율 : 69.51% · 건폐율 : 0.30%							

나.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 명	부 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 면적	연면 적	공 작 물 (기)	시설 명	부 호	위 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 면적		연면 적	공 작 물 (기)	
	계			561,641	171,026.22	-	5	1488.07	4568.87	605	계			561,641	171,241.22	-	6	1711.07	4868.87	605	시설 중215.0㎡ 바닥면적 중215.0㎡ 연면적 중420.0㎡	
도로 및 광장	소 계			39,464	39,464	-	-	-	-	-	소 계			39,464.0	39,464.0	-	-	-	-	-	-	
	도로	-	논현동 738-8	27,419	27,419	-	-	-	-	-	도로	-	논현동 738-8	27,419	27,419	-	-	-	-	-	-	
	광장	가	"	12,045	12,045	-	-	-	-	-	광장	가	"	12,045	12,045	-	-	-	-	-	-	
	광장1	가-1	"	(170)	(170)	-	-	-	-	-	광장1	가-1	"	(170)	(170)	-	-	-	-	-	-	
	광장2	가-2	"	(960)	(960)	-	-	-	-	-	광장2	가-2	"	(960)	(960)	-	-	-	-	-	-	
	광장3	가-3	"	(500)	(500)	-	-	-	-	-	광장3	가-3	"	(500)	(500)	-	-	-	-	-	-	
	광장4	가-4	"	(6,310)	(6,310)	-	-	-	-	-	광장4	가-4	"	(6,310)	(6,310)	-	-	-	-	-	-	
	광장5	가-5	"	(1,360)	(1,360)	-	-	-	-	-	광장5	가-5	"	(1,360)	(1,360)	-	-	-	-	-	-	
	광장6	가-6	"	(1,500)	(1,500)	-	-	-	-	-	광장6	가-6	"	(1,500)	(1,500)	-	-	-	-	-	-	
	광장7	가-7	"	(320)	(320)	-	-	-	-	-	광장7	가-7	"	(320)	(320)	-	-	-	-	-	-	
광장8	가-8	"	(503)	(503)	-	-	-	-	-	광장8	가-8	"	(503)	(503)	-	-	-	-	-	-		
광장9	가-9	"	(422)	(422)	-	-	-	-	-	광장9	가-9	"	(422)	(422)	-	-	-	-	-	-		
조경 시설	소 계			74,275	74,275	-	-	-	-	-	소 계			74,275	74,275	-	-	-	-	-	-	
	초화원	나	논현동 738-8	2,340	2,340	-	-	-	-	-	초화원	나	논현동 738-8	2,340	2,340	-	-	-	-	-	-	
	초화원 1	나-1	"	(940)	(940)	-	-	-	-	-	초화원 1	나-1	"	(940)	(940)	-	-	-	-	-	-	
	초화원 2	나-2	"	(1,120)	(1,120)	-	-	-	-	-	초화원 2	나-2	"	(1,120)	(1,120)	-	-	-	-	-	-	
	초화원 3	나-3	"	(145)	(145)	-	-	-	-	-	초화원 3	나-3	"	(145)	(145)	-	-	-	-	-	-	
	초화원 4	나-4	"	(135)	(135)	-	-	-	-	-	초화원 4	나-4	"	(135)	(135)	-	-	-	-	-	-	
	잔디광 장	다	"	13,055	13,055	-	-	-	-	-	잔디광 장	다	"	13,055	13,055	-	-	-	-	-	-	
	잔디광 장1	다-1	"	(6,975)	(6,975)	-	-	-	-	-	잔디광 장1	다-1	"	(6,975)	(6,975)	-	-	-	-	-	-	
	잔디광 장2	다-2	"	(6,080)	(6,080)	-	-	-	-	-	잔디광 장2	다-2	"	(6,080)	(6,080)	-	-	-	-	-	-	
	건강관 다발	라	논현동 738-8	20,988	20,988	-	-	-	-	-	건강관 다발	라	논현동 738-8	20,988	20,988	-	-	-	-	-	-	
조각정 원	마	"	9,440	9,440	-	-	-	-	-	조각정 원	마	"	9,440	9,440	-	-	-	-	-	-		
습지원	바	"	3,074	3,074	-	-	-	-	-	습지원	바	"	3,074	3,074	-	-	-	-	-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조경 시설	장미원	사	논현동 738-8	2,952	2,952	-	-	-	-	-	장미원	사	논현동 738-8	2,952	2,952	-	-	-	-		
	못	아	“	22,426	22,426	-	-	-	-	-	못	아	“	22,426	22,426	-	-	-	-		
	못1	아-1	“	(5,750)	(5,750)	-	-	-	-	-	못1	아-1	“	(5,750)	(5,750)	-	-	-	-		
	못2	아-2	“	(13,453)	(13,453)	-	-	-	-	-	못2	아-2	“	(13,453)	(13,453)	-	-	-	-		
	못3	아-2	“	(3,223)	(3,223)	-	-	-	-	-	못3	아-2	“	(3,223)	(3,223)	-	-	-	-		
휴양 시설	소 계			3,757	3,757	-	-	-	-	93	소 계			3,757	3,757	-	-	-	-	93	
	휴게소	자	논현동 738-8	2,357	2,357	-	-	-	-	-	휴게소	자	논현동 738-8	2,357	2,357	-	-	-	-	-	
	휴게소1	자-1	“	(1,025)	(1,025)	-	-	-	-	-	휴게소1	자-1	“	(1,025)	(1,025)	-	-	-	-	-	
	휴게소2	자-2	논현동 738-8	(90)	(90)	-	-	-	-	-	휴게소2	자-2	논현동 738-8	(90)	(90)	-	-	-	-	-	
	휴게소3	자-3	“	(70)	(70)	-	-	-	-	-	휴게소3	자-3	“	(70)	(70)	-	-	-	-	-	
	휴게소4	자-4	“	(65)	(65)	-	-	-	-	-	휴게소4	자-4	“	(65)	(65)	-	-	-	-	-	
	휴게소5	자-5	“	(502)	(502)	-	-	-	-	-	휴게소5	자-5	“	(502)	(502)	-	-	-	-	-	
	휴게소6	자-6	“	(215)	(215)	-	-	-	-	-	휴게소6	자-6	“	(215)	(215)	-	-	-	-	-	
	휴게소7	자-7	“	(160)	(160)	-	-	-	-	-	휴게소7	자-7	“	(160)	(160)	-	-	-	-	-	
	휴게소8	자-8	“	(154)	(154)	-	-	-	-	-	휴게소8	자-8	“	(154)	(154)	-	-	-	-	-	
	휴게소9	자-9	“	(48)	(48)	-	-	-	-	-	휴게소9	자-9	“	(48)	(48)	-	-	-	-	-	
	휴게소10	자-10	“	(28)	(28)	-	-	-	-	-	휴게소10	자-10	“	(28)	(28)	-	-	-	-	-	
	테크센터	차	“	1,400	1,400	-	-	-	-	-	테크센터	차	“	1,400	1,400	-	-	-	-	-	
	파고라	①	“	-	-	-	-	-	-	10	파고라	①	“	-	-	-	-	-	-	10	
	동형파고라 (로분다)	②	“	-	-	-	-	-	-	1	동형파고라 (로분다)	②	“	-	-	-	-	-	-	1	
	정원벤치	③	“	-	-	-	-	-	-	8	정원벤치	③	“	-	-	-	-	-	-	8	
등의자	④	“	-	-	-	-	-	-	74	등의자	④	“	-	-	-	-	-	-	74		
유희 시설	소 계			3,000	3,000	-	-	-	-	8	소 계			3,000	3,000	-	-	-	-	8	
	숲속모험놀이터	카	논현동 738-8	3,000	3,000	-	-	-	-	-	숲속모험놀이터	카	논현동 738-8	3,000	3,000	-	-	-	-	-	
	숲속체험시설	⑤	-	-	-	-	-	-	-	8	숲속체험시설	⑤	-	-	-	-	-	-	-	8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 시설	소 계			40,119	40,119	-	1	12605	42885	4	소 계			40,119	40,119	-	1	12605	42885	4			
	농구장	타	논현동 738-8	1,890	1,890	-	-	-	-	-	농구장	타	논현동 738-8	1,890	1,890	-	-	-	-	-			
	테니스장	파	“	2,030	2,030	-	-	-	-	-	테니스장	파	“	2,030	2,030	-	-	-	-	-			
	체력단련장	하	“	130	130	-	-	-	-	-	체력단련장	하	“	130	130	-	-	-	-	-			
	체력단련장1	하-1	“	(65)	(65)	-	-	-	-	-	체력단련장1	하-1	“	(65)	(65)	-	-	-	-	-			
	체력단련장2	하-2	“	(65)	(65)	-	-	-	-	-	체력단련장2	하-2	“	(65)	(65)	-	-	-	-	-			
	골프연습장	가	“	27,069	27,069	-	1	12605	42885	-	골프연습장	가	“	27,069	27,069	-	1	12605	42885	-			
	축구장	나	“	9,000	9,000	-	-	-	-	-	축구장	나	“	9,000	9,000	-	-	-	-	-			
체력단련시설	⑥	“	-	-	-	-	-	-	4	체력단련시설	⑥	“	-	-	-	-	-	-	-	4			
교양 시설	소 계			836	836	-	-	-	-	-	소 계			1,051	1,051	-	1	215	430	-	증215.0㎡		
	호수음악당	다	논현동 738-8	836	836	-	-	-	-	-	호수음악당	다	논현동 738-8	836	836	-	-	-	-	-			
	생태체험관	-	“	-	-	-	-	-	-	-	생태체험관	-	“	215	215	-	1	215	430	-	증215.0㎡ 바닥면적 증215.0㎡ 연면적 증430.0㎡		
편의 시설	소 계			9,245.22	9,245.22	-	2	113.22	113.22	-	소 계			9,245.22	9,245.22	-	2	113.22	113.22	-			
	화장실	1	논현동 738-8	125.22	125.22	-	2	113.22	113.22	-	화장실	1	논현동 738-8	125.22	125.22	-	2	113.22	113.22	-			
	화장실1	1-1	“	(62.61)	(62.61)	RC	3	1	(56.61)	(56.61)	-	화장실1	1-1	“	(62.61)	(62.61)	RC	3	1	(56.61)	(56.61)	-	
	화장실2	1-2	“	(62.61)	(62.61)	RC	3	1	(56.61)	(56.61)	-	화장실2	1-2	“	(62.61)	(62.61)	RC	3	1	(56.61)	(56.61)	-	
	주차장	2	“	9,120	9,120	-	-	-	-	-	주차장	라	“	9,120	9,120	-	-	-	-	-	-		
	주차장1	2-1	“	(3,010)	(3,010)	-	-	-	-	-	주차장1	라-1	“	(3,010)	(3,010)	-	-	-	-	-	-		
	주차장2	2-2	“	(2,200)	(2,200)	-	-	-	-	-	주차장2	라-2	“	(2,200)	(2,200)	-	-	-	-	-	-		
	주차장3	2-3	“	(844)	(844)	-	-	-	-	-	주차장3	라-3	“	(844)	(844)	-	-	-	-	-	-		
	주차장4	2-4	“	(1,120)	(1,120)	-	-	-	-	-	주차장4	라-4	“	(1,120)	(1,120)	-	-	-	-	-	-		
	주차장5	2-5	“	(1,470)	(1,470)	-	-	-	-	-	주차장5	라-5	“	(1,470)	(1,470)	-	-	-	-	-	-		
	주차장6	2-6	“	(476)	(476)	-	-	-	-	-	주차장6	라-6	“	(476)	(476)	-	-	-	-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명	부 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 조	규모	건축물(㎡)		공 작 물 (기)	시설명	부 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 조	규모	건축물(㎡)		공 작 물 (기)	
								바다 면적	연면 적									바다 면적			연면 적
관 리 사 설	소 계			330	330	-	2	139.80	139.80	500	소 계			330	330	-	2	139.80	139.80	500	
	관리사무소 (화장실)	3	논현동 738-8	330	330	-	2	139.80	139.80	-	관리사무소 (화장실)	3	논현동 738-8	330	330	-	2	139.80	139.80	-	
	관리사무소 (화장실)1	3-1	“	(160)	(160)	RC조	1	(69.90)	(69.90)	-	관리사무소 (화장실)1	3-1	“	(160)	(160)	RC조	1	(69.90)	(69.90)	-	
	관리사무소 (화장실)2	3-2	“	(170)	(170)	RC조	1	(69.90)	(69.90)	-	관리사무소 (화장실)2	3-2	“	(170)	(170)	RC조	1	(69.90)	(69.90)	-	
	일구게이트	㉗	“	-	-	-	-	-	-	3	일구게이트	㉗	“	-	-	-	-	-	-	3	
	공원동	㉘	“	-	-	-	-	-	-	416	공원동	㉘	“	-	-	-	-	-	-	416	
	블라드	㉙	“	-	-	-	-	-	-	77	블라드	㉙	“	-	-	-	-	-	-	77	
	공원안내판	㉚	“	-	-	-	-	-	-	4	공원안내판	㉚	“	-	-	-	-	-	-	4	
	소 계			30064.78	-	-	-	-	-	-	소 계			300399.78	-	-	-	-	-	-	감) 215
녹지 및 기 타 사 설	녹지	-	전지역	30064.78	-	-	-	-	-	녹지	-	전지역	300399.78	-	-	-	-	-	-	감) 215	

다. 도 로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7,741	27,419				변경없음
변경					7,741	27,419				
당초	소로	2	1	8	31	248	진입로	부지외곽	가-2.광장2	변경없음
변경	소로	2	1	8	31	248	진입로	부지외곽	가-2.광장2	
당초	소로	3	1	7	137	959	진입로	부지외곽	소로 3-2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1	7	137	959	진입로	부지외곽	소로 3-2	
당초	소로	3	2	4	435	1,740	진입로	2-6.주차장6	다-1.잔디광장1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2	4	435	1,740	진입로	라-6.주차장6	다-1.잔디광장1	
당초	소로	3	3	6	254	1,524	산책로	가-7.광장7	자-6.휴게소10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3	6	254	1,524	산책로	가-7.광장7	자-6.휴게소10	
당초	소로	3	4	6	159	954	진입로	부지외곽	자-6.휴게소10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4	6	159	954	진입로	부지외곽	자-6.휴게소10	
당초	소로	3	5	6	470	2,820	산책로	자-6.휴게소10	사.장미원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5	6	470	2,820	산책로	자-6.휴게소10	사.장미원	
당초	소로	3	6	4	56	224	산책로	소로 3-4	가-2.광장2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6	4	56	224	산책로	소로 3-4	가-2.광장2	
당초	소로	3	7	6	20	120	진입로	부지외곽	파.테니스장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7	6	20	120	진입로	부지외곽	파.테니스장	
당초	소로	3	8	5	78	390	산책로	가-2.광장2	가-3.광장3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8	5	78	390	산책로	가-2.광장2	가-3.광장3	
당초	소로	3	9	5	28	140	산책로	부지외곽	사.장미원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9	5	28	140	산책로	부지외곽	사.장미원	
당초	소로	3	10	6	208	1,248	산책로	소로 3-5	가-5.광장5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10	6	208	1,248	산책로	소로 3-5	가-5.광장5	
당초	소로	3	11	4.5	74	333	진입로	부지외곽	자-7.휴게소11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11	4.5	74	333	진입로	부지외곽	자-7.휴게소1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로	3	12	4	50	200	산책로	소로 3-14	산책로 3-19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12	4	50	200	산책로	소로 3-14	산책로 3-19	
당초	소로	3	13	4	40	160	산책로	산책로 3-14	소로 3-14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13	4	40	160	산책로	산책로 3-14	소로 3-14	
당초	소로	3	14	6	683	4,098	진입로	부지외곽	가-5.광장5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14	6	683	4,098	진입로	부지외곽	가-5.광장5	
당초	소로	3	15	1.5	118	177	산책로	다.호수음악당	소로 3-14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15	1.5	118	177	산책로	마.조각공원	소로 3-14	
당초	소로	3	16	6	71	426	산책로	소로 3-14	마.조각정원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16	6	71	426	산책로	소로 3-14	마.조각정원	
당초	산책로	3	1	3.5	138	483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1	3.5	138	483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당초	산책로	3	2	3	103	309	산책로	가-1.광장1	다-1.잔디광장1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2	3	103	309	산책로	가-1.광장1	다-1.잔디광장1	
당초	산책로	3	3	2	419	838	산책로	산책로 3-2	산책로 3-35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3	2	419	838	산책로	산책로 3-2	산책로 3-35	
당초	산책로	3	4	2	31	62	산책로	소로 2-1	파.테니스장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4	2	31	62	산책로	소로 2-1	파.테니스장	
당초	산책로	3	5	3	15	45	산책로	가-2.광장2	소로 3-5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5	3	15	45	산책로	가-2.광장2	소로 3-5	
당초	산책로	3	6	2	16	32	산책로	2-1.주차장1	나-4.초화원4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6	2	16	32	산책로	라-1.주차장1	나-4.초화원4	
당초	산책로	3	7	2.5	21	52.5	산책로	가-3.광장3	소로 3-5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7	2.5	21	52.5	산책로	가-3.광장3	소로 3-5	
당초	산책로	3	8	2.5	17	42.5	산책로	2-1.주차장1	가-3.광장3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8	2.5	17	42.5	산책로	라-1.주차장1	가-3.광장3	
당초	산책로	3	9	2	88	176	산책로	가-4.광장4	소로 3-5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9	2	88	176	산책로	가-4.광장4	소로 3-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3	10	3	92	276	산책로	가-4.광장4	소로 3-5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10	3	92	276	산책로	가-4.광장4	소로 3-5	
당초	산책로	3	11	3	86	258	산책로	가-4.광장4	소로 3-5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11	3	86	258	산책로	가-4.광장4	소로 3-5	
당초	산책로	3	12	3	44	132	진입로	부지외곽	소로 3-5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12	3	44	132	진입로	부지외곽	소로 3-5	
당초	산책로	3	13	2	259	518	진입로	부지외곽	소로 3-10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13	2	259	518	진입로	부지외곽	소로 3-10	
당초	산책로	3	14	2	225	450	산책로	산책로 3-13	소로 3-14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14	2	225	450	산책로	산책로 3-13	소로 3-14	
당초	산책로	3	15	3	31	93	진입로	부지외곽	가-5.광장5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15	3	31	93	진입로	부지외곽	가-5.광장5	
당초	산책로	3	16	3	31	93	진입로	부지외곽	가-5.광장5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16	3	31	93	진입로	부지외곽	가-5.광장5	
당초	산책로	3	17	2	52	104	산책로	가-5.광장5	산책로 3-14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17	2	52	104	산책로	가-5.광장5	산책로 3-14	
당초	산책로	3	18	2	42	84	진입로	부지외곽	산책로 3-19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18	2	42	84	진입로	부지외곽	산책로 3-19	
당초	산책로	3	19	3	72	216	산책로	가-5.광장5	소로 3-11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19	3	72	216	산책로	가-5.광장5	소로 3-11	
당초	산책로	3	20	3	121	363	산책로	가-8.광장9	가-8.광장9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20	3	121	363	산책로	가-8.광장9	가-8.광장9	
당초	산책로	3	21	3	38	114	산책로	산책로 3-20	소로 3-11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21	3	38	114	산책로	산책로 3-20	소로 3-11	
당초	산책로	3	22	2	54	108	산책로	산책로 3-20	자-7.휴게소11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22	2	54	108	산책로	산책로 3-20	자-7.휴게소11	
변경	산책로	3	23	2	23	46	산책로	자-7.휴게소11	소로 3-14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23	2	23	46	산책로	자-7.휴게소11	소로 3-1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3	24	6	242	1,452	진입로	부지외곽	소로 3-14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24	6	242	1,452	진입로	부지외곽	소로 3-14	
당초	산책로	3	25	2	175	350	진입로	부지외곽	다-2.잔디광장2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25	2	175	350	진입로	부지외곽	다-2.잔디광장2	
당초	산책로	3	26	2	39	78	산책로	2-2.주차장2	산책로 3-27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26	2	39	78	산책로	라-2.주차장2	산책로 3-27	
당초	산책로	3	27	2	176	352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27	2	176	352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당초	산책로	3	28	2	118	236	산책로	산책로 3-27	소로 3-14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28	2	118	236	산책로	산책로 3-27	소로 3-14	
당초	산책로	3	29	2	15	30	산책로	소로 3-14	자-5.휴게소8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29	2	15	30	산책로	소로 3-14	자-5.휴게소8	
당초	산책로	3	30	2	64	128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30	2	64	128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당초	산책로	3	31	2	52	104	산책로	산책로 3-27	산책로 3-27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31	2	52	104	산책로	산책로 3-27	산책로 3-27	
당초	산책로	3	32	2	132	264	산책로	산책로 3-30	소로 3-14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32	2	132	264	산책로	산책로 3-30	소로 3-14	
당초	산책로	3	33	2	60	120	산책로	산책로 3-3	부지외곽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33	2	60	120	산책로	산책로 3-3	부지외곽	
당초	산책로	3	34	2	287	574	산책로	산책로 3-35	소로 3-5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34	2	287	574	산책로	산책로 3-35	소로 3-5	
당초	산책로	3	35	3	168	504	산책로	부지외곽	자-6.휴게소10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35	3	168	504	산책로	부지외곽	자-6.휴게소10	
당초	산책로	3	36	3	51	153	진입로	부지외곽	산책로 3-24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36	3	51	153	진입로	부지외곽	산책로 3-24	
당초	산책로	3	37	2	34	68	산책로	산책로 3-27	소로 3-14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37	2	34	68	산책로	산책로 3-27	소로 3-1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3	38	2	9	18	진입로	부지외곽	산책로 3-25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38	2	9	18	진입로	부지외곽	산책로 3-25	
당초	산책로	3	39	2	5	10	산책로	나-3.초화원3	소로 3-5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39	2	5	10	산책로	나-3.초화원3	소로 3-5	
당초	산책로	3	40	2	235	470	산책로	가-9.광장10	소로 3-14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40	2	235	470	산책로	가-9.광장10	소로 3-14	
당초	산책로	3	41	2	53	106	산책로	2-2. 주차장2	산책로 3-26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41	2	53	106	산책로	라-2. 주차장2	산책로 3-26	
당초	산책로	3	42	1.5	74	111	산책로	산책로 3-41	자-9. 휴게소13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42	1.5	74	111	산책로	산책로 3-41	자-9. 휴게소13	
당초	산책로	3	43	1.5	54	81	산책로	산책로 3-42	자-10. 휴게소14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43	1.5	54	81	산책로	산책로 3-42	자-10. 휴게소14	
당초	산책로	3	44	2	136	272	산책로	자-10. 휴게소14	자-8. 휴게소12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44	2	136	272	산책로	자-10. 휴게소14	자-8. 휴게소12	
당초	산책로	3	45	2	282	564	산책로	산책로 3-44	소로 3-16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45	2	282	564	산책로	산책로 3-44	소로 3-16	
당초	산책로	3	46	2	32	64	산책로	산책로 3-45	산책로 3-47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46	2	32	64	산책로	산책로 3-45	산책로 3-47	
당초	산책로	3	47	2	101	202	산책로	마. 조각정원	카. 숲속모험놀이터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47	2	101	202	산책로	마. 조각정원	카. 숲속모험놀이터	
당초	산책로	3	48	3.5	12	42	산책로	산책로 3-47	산책로 3-49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48	3.5	12	42	산책로	산책로 3-47	산책로 3-49	
당초	산책로	3	49	2	152	304	산책로	산책로 3-49	산책로 3-49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49	2	152	304	산책로	산책로 3-49	산책로 3-49	
당초	산책로	3	50	2	30	60	산책로	산책로 3-49	산책로 3-49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50	2	30	60	산책로	산책로 3-49	산책로 3-49	
당초	산책로	3	51	2	9	18	산책로	산책로 3-49	산책로 3-50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51	2	9	18	산책로	산책로 3-49	산책로 3-50	
당초	산책로	3	52	2	14	28	산책로	산책로 3-49	마. 조각정원	변경없음
변경	산책로	3	52	2	14	28	산책로	산책로 3-49	마. 조각정원	

늘솔길근린공원 토지조서

☐ 총괄면적조서

○ 총괄면적표

동명	필지수	공부면적(㎡)	공원면적(㎡)	기타면적(㎡)	비고
논현동	5	561,641	561,641		
소 계	5	561,641.0	561,641		

○ 소유자별 면적표67

구분	필지수	공부면적(㎡)	공원면적(㎡)	기타면적(㎡)	비고
구유지	5	561,641	561,641		인천시 남동구
소 계	5	561,641.0	561,641		

○ 지목별 면적표

구분	필지수	공부면적(㎡)	공원면적(㎡)	기타면적(㎡)	비고
공원	5	561,641	561,641		
소 계	5	561,641.0	561,641.0		

☐ 세부면적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 현황	전체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합 계				561,641	561,641			
논현동	738-8	공	공원	247,750	247,750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762-3	공	공원	186,437.7	186,437.7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763-1	공	공원	125,024.9	125,024.9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763-4	공	공원	353.4	353.4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763-5	공	공원	2,075.3	2,075.3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 남동구	

4 관련도면

■ 위치도 (SCALE = 1/12,000)

■ 조성계획도 (SCALE = 1/3,000)

■ 토지이용계획도 (SCALE = 1/3,000)

■ 시설계획도 (SCALE = 1/3,000)

■ 동선계획도 (SCALE = 1/3,000)

남동구 공고 제2020-1944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0.9.29. ~ 2020.10.13.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96노2700외 5대
 6. 유의사항
-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

2020년 9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일련 번호	차 명	차량등록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 소	보관장소 /보관일	압류(저당)권설정내역
2020-00208	96노2700	대우11.5 톤카고트 럭	염*호 /67****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로 *6, **2동 **2호(논*동, 에*****란아파트)	기전산업㈜ 폐차사업소 /2020.7.20.	인천시 중구청 (환경관리과) 인천중부경찰서 인천시 연수구 (교통행정과) 인천시 남동구 (세입징수과 자동차관리과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
2020-00211	28도3540	SM525V	김*현/74****	경상남도 사천시 사*읍 진*로 13**, **3동 ***3호(사****란)	㈜인천 폐차사업소 /2020.7.22.	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남 거제시 (교통행정과, 징수과) 울산시 남구 (교통행정과) 경남 통영시 (교통정책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제교통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부산경남본부, 충북스마트하이패스센터) 사천시청 (세무과)
2020-00214	서울30러 4000	NEW EF쏘나타L PG	정*호 외1인 (고*영) /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길 *8-*(흥*동)	㈜인천 폐차사업소 /2020.7.22.	서울 중구 (교통지도과) 서울 종로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산업환경과, 세무1과, 세무2과) 충로경찰서 (교통과) 서울 구로구 (교통지도반) 서울 강남구 (교통지도과) 성남시 중원구 (경제교통과) 인천시 남동구 (교통행정과) 성남시 수정구 (경제교통과) 부천시 (주차지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서울시 서대문구 (교통관리과) 서울중로경찰서 경기도 광명시 (지도민원과) 서울 성북구 (교통지도과) 부천시시공사 (주차사업부)

2020-00216	20구8098	프라이드	유*희 /72****	경기도 시흥시 신**길 2**-*, *동 **2호(신*동, 금**라)	(주)인천 페차사업소 /2020.7.10.	경기 시흥시 (정수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사업소) 경기 부천시 (주차지도과) (주)한빛자산관리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2020-00222	31노9065	스파크 1.0	(주)신***고 /13****	경기도 광명시 철*로 *1(철*동)	(주)서울 페차사업소 /2020.7.17.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사법원 경기 광명시 (세정과, 지도민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 광명경찰서
2020-00231	69어1758	아반떼 (AVANTE)	YU*** AL*****ER /83****	충청남도 아산시 신*면 읍**길 1**-*, *동 **3호	(주)서울 페차사업소 /2020.7.18.	인천시 연수구 (차량민원과) 충남 아산시 (정수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인천시 남동구 (세입징수과)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44호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제안이유
정책개발 등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의원연구단체 구성, 등록, 취소, 활동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연구활동 계획, 결과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연구활동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입법예고 기간 : 2020. 9. 25. ~ 10. 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2,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9
----------	------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25일
발 의 자 : 조성민, 오용환 의원
찬 성 자 : 정재호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정책개발 등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의원연구단체 구성, 등록, 취소, 활동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연구활동 계획, 결과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연구활동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7

조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남동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구정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가 정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대표자(이하 “회장”이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려면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해당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제3조제1항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연구활동비 등의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6조(연구활동 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2. 입법 및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한 회의, 공청회, 현장조사 등
3.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학술 연구활동 등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 계획·변경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5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및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심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및 연구용역 성과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비를 4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통지 후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주제 수행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 관련 경비 등 그 밖에 필요 경비

③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

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④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3조(연구활동 경비 지출) 제11조 및 제12조의 연구활동 경비 지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4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단체 활동)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연구단체 활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 1. 단체 명칭 :
- 2. 설립 목적 :
- 3. 단체 인적사항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제출인: 회장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의회의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변동의원	당초	의원
	변경	의원
변동일자	년 월 일	
변동사유		
그 밖에 사항		

년 월 일

제출인: 회장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활동비	총액	금 원(₩)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그 밖에 사항			

※ 붙임 : ○○○ 1부

년 월 일

제출인: 회장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당초 계획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 계획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 배임 : ○○○ 1부

년 월 일
 제출인: 회장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 의원 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 원
연구 주제		
심의 결과	내 용	
	결 과	

III
IIII
IIII

남동구의회 의장 (인)

의원연구단체 회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영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비용	수령액	금 원(W)	
	집행액	금 원(W)	
	잔 액	금 원(W)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W)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W)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W)
		기 타	금 원(W)
연구예정비	수령액	금 원(W)	
	집행액	금 원(W)	
	잔 액	금 원(W)	
특기사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 ※ 붙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등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제출인: 회장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단체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과 제 명	
소요예산	금 원
용역기간	개월 (※ 실제 연구기간)
연구목적 (필요성)	
연구내용 등 세부 연구계획	「붙임」
연구과제 중복 검 토 결 과	
용역결과 활용계획	

※ 붙임: 연구용역 세부 추진계획서 1부.

500 400 300

제출인: 회장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연구활동비의 지원), 12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연구용역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연구용역비)는 매년 구성된 연구단체의 신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지원되는 사항으로,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성을 생략하고자 함
- 2020년 지원액 : 연구활동비-4,000천원/ 정책개발비-없음(예산액:25,000천원)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임 덕 규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에 필요경비

②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연구활동비는 500만원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6조(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
 2.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한 회의, 토론회, 공청회, 현장조사 등
 3.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책 연구활동 등
-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장은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

없이 5명 이상의 남동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대표자(이하 “회장”이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려면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해당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 이내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및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심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동업무추진비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 통지 후 집행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중간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45호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회의장 안에서 녹음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구민의 알권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녹음 등을 할 경우 허가 대상 및 절차 등의 정비 (안 제81조)
- 녹음 등의 제한 및 취소 등의 사항 신설(안 제81조의 2)
-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0. 9. 25. ~ 10. 5.(1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안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일
발 의 자 : 김안나 의원
찬 성 자 : 조성민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회의장 안에서 녹음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구민의 알권리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함.

☐ 주요내용

- 녹음 등을 할 경우 허가 대상 및 절차 등의 정비(안 제81조)
- 녹음 등의 제한 및 취소 등의 사항 신설(안 제81조2)
-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85조제4항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 중 “기자”를 “기자 또는 제78조의 방청인”으로, “중계방송”을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녹음”을 “녹음”으로, “자는”을 “제1항의 자는”으로, “허가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로, “허가를 얻어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을 “위원장의 구두에 따른 허가로 갈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를 “안”으로 한다.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을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 및 제3항의 사무직원은”으로, “하여서는”을 “해서는”으로 한다.

제8장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녹음 등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등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로하기로 결의한 때
2.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3. 녹음 등의 신청자가 회의장의 수용능력을 넘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사일정이 작성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1조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녹음 등의 행위가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위원회) 회의 상
을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신 청 인

소속(또는 주소) :
성 명 :

3. 목 적 :

4. 방 법 :

5. 기 구 :

6. 취재요원수 : 명

년 월 일

신청자(발행인 또는 신청인)

인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서

_____귀하

귀하가 신청한 회의장(본회의.위원회)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에 대하여
허가하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방 법 :

3. 기 구 :

4. 취재용 출입증 : 매

년 월 일

남동구의회 의장(위원장)을 대리하여
남동구의회 사무국장 인

준 수 사 항

1.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시에는 신청허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며,
항상 허가서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3.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 사무국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중이라도 의회(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위원장)
의 지시가 있으면 퇴장하여야 합니다.
5.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1조(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에 등록된 <u>기자</u> 에 한하여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u>중계방송</u> 을 허용할 수 있다.	제81조(녹음·녹화 등) ① ----- ----- ----- <u>기자 또는 제78조의 방청인</u> ----- ----- --- <u>중계방송</u> (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 --.
② <u>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u> 때 회기 초에 <u>허가신청서</u> 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u>허가</u> 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u>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u> 할 수 있다.	② <u>녹음</u> ----- --- <u>제1항의 자는</u> --- <u>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u> --- <u>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u> 를 교부 받아야 -----. --- <u>위원장의 구두에 따른 허가</u> 로 같음----- -----.
③ 사무직원의 기록 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u>내</u> 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③ ----- ----- <u>안</u> ----- ----- -----.
④ <u>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u>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u>제1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 및 제3항의 사무직원은</u> ----- ----- <u>해서는</u> -----.
<신설>	<u>제81조의2(녹음 등의 제한 및 취</u>

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등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로하기로 결의한 때

2.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3. 녹음 등의 신청자가 회의장의 수용능력을 넘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사일정이 작성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1조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녹음 등의 행위가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81조(녹음·녹화 등)에서 회기중 회의장(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방청인에게도 녹음 및 녹화 등을 허가하는 사항으로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작성자 : 남동구 의회사무국장 임 덕 규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의장(본회의·위원회)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등(이하 "녹음등"이라 한다)의 허가 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등을 하고자하는 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녹음 등의 허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회의장에서의 녹음 등은 해당위원회 위원장의 구두에 의한 허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06-13>

제3조 (녹음 등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등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로하기로 결의한 때
2.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3. 녹음 등이 신청자가 회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4조 (허가의 취소)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녹음 등의 행위가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과 단체방청인은 기재사항 일부를 생략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 직원이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
- ⑤ 의장은 장애인의 방청을 허가한 경우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1조(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사무직원의 기록 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46호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이용과 주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신고체계의 마련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제9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0. 9. 25. ~ 10. 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안 번호	2362
----------	------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25일
발 의 자 : 이용우 의원
찬 성 자 : 조성민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이용과 주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신고체계의 마련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제9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제11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조~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 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남동구가 직접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정은 남동구 소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
- 안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및 제11조(홍보)와 관련하여 점검을 위한 장비구입, 홍보 등에 따른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점검장비 구입, 홍보사업 관련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점검장비 : 45 대 × 700천원 = 31,500천원 / 홍보물(점검 스티커 등) : 3,000천원)

작성자 : 주민복지국 여성가족과장 김 종 수 (인)

관계법령 검토와 발채사항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조~제4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참고자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중화장실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 2019. 12. 27.]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660호, 2019. 12. 27.,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6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2., 2019. 6. 28.)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7. 12. 22.)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47호

남동구 환경기본 조례안

「남동구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구·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사항(안 제5조~제7조)
- 언론 및 단체·교육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자연환경의 보전 및 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환경교육 및 홍보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0. 9. 25. ~ 10. 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환경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2363
----------	------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25일
발 의 자 : 정재호 의원
찬 성 자 : 조성민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남동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구·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사항(안 제5조~제7조)
- 언론 및 단체·교육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자연환경의 보전 및 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환경교육 및 홍보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남동구 환경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남동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 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제공과 주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친환경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구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 인력의 충원, 재정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 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저감 및 지역 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 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구민·민간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④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언론 및 단체의 역할) ① 언론기관은 구민·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환경보전의식 홍보 및 계몽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은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사업자,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고려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

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및 유지)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로 정한 지역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위해 요인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입지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행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

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 감시체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①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한다.

② 구는 제1항의 환경교육, 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서 교육비 등 이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환경홍보물 또는 환경간행물을 교육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으며, 환경관련 홍보 문구가 기재된 홍보 물품을 캠페인 및 환경교육 장소에서 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22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인천광역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교류 등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 10년의 1회 환경보전계획 수립예산 57,000천원

⇒ 2021년도 본예산 반영 예산 참고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 권고적 형식으로 예산의 추계가 어려움

제20조(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 연간 예산 1,000천원

⇒ 2021년도 본예산 반영 예산 참고

제21조(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 권고적 형식으로 예산의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10조, 제20조 : 추계가능 예산(연평균 6,700천원)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제15조, 제21조 : 추계불가능 예산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환경기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세출의 순증가액에 대한 비용은 제10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10조 및 제20조의 추계가능 예산은 연평균 6,700천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며, 제15조, 제21조의 세출예상비용은 추계가 불가능한 권고적 형식의 내용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

작성자 : 환경교통국 환경보전과장 박 홍 순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48호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 (안 제2조)
 -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 (안 제5조)
- 입법예고 기간 : 2020. 9. 25. ~ 10. 5.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64
----------	------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25일

발 의 자 : 이용우 의원

찬 성 자 : 유광희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 (안 제2조)
-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 (안 제5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 화장실을 말한다.

2.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공간을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7.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 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신설>	제5조(설치기준)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공간을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7.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로 수반되는 예산 없음

제5조(설치기준)

- 제6호 : 안심스크린 설치비용으로 약 40,000천원
- 제7호 : 안심비상벨 설치비용으로 예산 수반 없음(기존 시설 설치 완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한 세출의 순증가액은 제5조(설치기준)의 개정에 따른 기존 공중화장실의 안심스크린 설치비용이 추계될 것으로 판단됨.
- 제5조(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추계되는 비용은 약 40,000천원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

작성자 : 환경교통국 환경보전과장 박 홍 순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49호

남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남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심야시간에 응급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구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건강한 구민생활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제2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사항 : (안 제3조)
- 근무 약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0. 9. 25. ~ 10. 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365

발의년월일 : 2020년 9월 25일
발 의 자 : 이선옥 의원
찬 성 자 : 강경숙 의원 외 5명

☐ 제안이유

- 심야시간에 응급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구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건강한 구민생활을 도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제2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사항 : (안 제3조)
- 근무 약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29조
- 「약사법」 제20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구민에게 심야시간대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개설약국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 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약사가 제4조를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의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공심야약국은 2019년 1개소를 시비 보조사업(시비100%)으로 시작하여 2021년 3개소, 2022년 4개소, 2023년 5개소로 권역별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비용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 운영약국의 경우 야간 및 공휴일 근무약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여 운영 시간당 3만원을 지원함.
※ 지원운영시간 : 3시간(22시부터 익일01시)
※ 지원단가 : 단기채용약사 파트타임 시급단가(3만원)적용

○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2021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추계기간은 2021.1월부터 2025년으로 하고,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예정임.

나. 추계 결과

○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은 2021년 65,700천원이 소요되고, 2025년까지 558,450천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산출내용 (단위:원)

시행연도	인건비		총계	재원
	산출기초	금액		
2020년	30,000원*3시간*365일*1개소	32,850,000	32,850,000	시비 100
2021년	30,000원*3시간*365일*1개소 30,000원*3시간*106일*1개소 30,000원*3시간*259일*1개소	65,700,000	65,700,000	시비 50, 구비 50
2022년	30,000원*3시간*365일*2개소 30,000원*3시간*106일*1개소 30,000원*3시간*259일*1개소	98,550,000	98,550,000	시비 33, 구비 67
2023년	30,000원*3시간*365일*3개소 30,000원*3시간*106일*1개소 30,000원*3시간*259일*1개소	131,400,000	131,400,000	시비 25, 구비 75
2024년	30,000원*3시간*365일*3개소 30,000원*3시간*106일*1개소 30,000원*3시간*259일*1개소	131,400,000	131,400,000	시비 25, 구비 75
2025년	30,000원*3시간*365일*3개소 30,000원*3시간*106일*1개소 30,000원*3시간*259일*1개소	131,400,000	131,400,000	시비 25, 구비 75

(별지 제1호서식)

다. 재원조달 방안

○ 2020년까지는 시비 100%로 추진하였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구비 50%에서 구비 75%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함.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한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32,850	32,850	32,850	32,850	32,850	164,250
	시·도비 보조금	32,850	32,850	32,850	32,850	32,850	164,250
세 출		65,700	98,550	131,400	131,400	131,400	558,450
	공공심야약국운영	65,700	98,550	131,400	131,400	131,400	558,450
재원 조달		65,700	98,550	131,400	131,400	131,400	558,450
의존 재원	소 계	32,850	32,850	32,850	32,850	32,850	164,250
	보조금	국비	-	-	-	-	-
		시비	32,850	32,850	32,850	32,850	164,250
	지방교부세	-	-	-	-	-	-
	조정교부금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2,850	65,700	98,550	98,550	98,550	394,200
	지방세	32,850	65,700	98,550	98,550	98,550	394,200
	세외수입	-	-	-	-	-	-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29조 □ 「약사법」 제20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참고자료]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29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 약사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56호, 2019. 8. 27., 타법개정] 일법예고안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 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 3. 18.>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50호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스포츠를 좋아하는 유소년들이 쉽고 편하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을 설치·운영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훈련 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0. 9. 25. ~ 10. 5.(1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86,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황규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0년 9월 24일

발 의 자 :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강경숙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스포츠를 좋아하는 유소년들이 쉽고 편하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을 설치·운영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훈련 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소년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이하 “스포츠단”이라 한다)에 두는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구
2. 야구

② 종목별 스포츠단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구 : 남동구 유소년축구단(이하 “축구단”이라 한다)
2. 야구 : 남동구 리틀야구단(이하 “야구단”이라 한다)

③ 스포츠단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에 두고, 감독·코치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3조(구성) ① 스포츠단은 단장 1명과 종목별 선수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종목별 선수단원은 감독 1명과 코치 2명 및 40명 이내의 선수로 구성한다.

제4조(직무) ① 단장은 스포츠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독은 선수의 발굴, 선발 및 지도, 경기운영 등의 책임을 진다.

③ 감독은 선수의 출결상황, 훈련내용, 특이사항 등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제5조(훈련장소) ① 스포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적체육공원야구장, 소래샛길인조잔디구장을 훈련장소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회개최나 유지보수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스포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 스포츠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조(예산지원)
- 남동구청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규칙 제8조(수당 등의 지급)
- 남동구청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4조(실비보상)

나. 비용발생요인

- 감독·코치 강사수당, 선수단운영비(훈련실비, 운동용품구입), 상해보험료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입법예고중인「남동구청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도자의 수당 지급일수를 2021년부터 월 23일 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종목별 지도자의 수당은 감독은 1일 15만원, 코치 1일 13만원으로, 월23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감독 : 150천원 × 23일 × 12월 × 1명 = 41,400천원
 - 코치 : 130천원 × 23일 × 12월 × 2명 = 71,760천원
- (2) 선수단 운영비는 현년도 예산을 기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종목별 연간 24,000천원 / 운동용품, 훈련실비 등)
 - 선수단 운영비 : 24,000천원 × 1식 = 24,000천원
- (3) 선수단 상해보험료는 1인당 30천원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 상해보험료 : 30천원 × 43명 = 1,290천원

나. 추계 결과 (향후 5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276,900	276,900	276,900	276,900	276,900
유소년축구단	138,450	138,450	138,450	138,450	138,450
지도자 수당	113,160	113,160	113,160	113,160	113,160
감독 1명	41,400	41,400	41,400	41,400	41,400
코치 2명	71,760	71,760	71,760	71,760	71,760
선수단지원(운영비)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상해보험료	1,290	1,290	1,290	1,290	1,290
리틀야구단	138,450	138,450	138,450	138,450	138,450
지도자 수당	113,160	113,160	113,160	113,160	113,160
감독 1명	41,400	41,400	41,400	41,400	41,400
코치 2명	71,760	71,760	71,760	71,760	71,760
선수단지원(운영비)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상해보험료	1,290	1,290	1,290	1,290	1,290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로 추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276,900	276,900	276,900	276,900	276,900	1,384,5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구 비		276,900	276,900	276,900	276,900	276,900	1,384,50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보호 및 육성한다.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
 2.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3.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지원, 참가
 4. 남동구청 꿈나무 스포츠단 운영 (개정 2019. 6. 28.)
 5. 그 밖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구청장은 생활체육단체가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할 경우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한 종목당 연 1회에 한한다.
- ④ 남동구청 꿈나무 스포츠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4. 1. 28., 2015. 3. 27., 2019. 1. 15., 2020. 2. 4.>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조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51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제한에 따라 일일사용자를 위한 일일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위약금에 대한 합리적 반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체육시설 운영방식의 공정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의2)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책임 및 사용 제한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제8조의2)
-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규정(안 제9조 별표 1)
- 체육시설사용료 반환 규정(안 제11조 별표 2)
- 체육시설 수탁자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0. 9. 25. ~ 10. 5.(1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6,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규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0년 9월 24일

발 의 자 :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강경숙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제한에 따라 일일사용자를 위한 일일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위약금에 대한 합리적 반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체육시설 운영방식의 공정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의2)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책임 및 사용 제한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제8조의2)
- 체육시설사용료 징수 규정(안 제9조 별표 1)
- 체육시설사용료 반환 규정(안 제11조 별표 2)
- 체육시설 수탁자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내 군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비교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의안번호 제2019-483호, 제2020-250호

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용자가 시설사용 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경우
3.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제5항부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종전의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특정장소에 특정단체 입간판·현수막·벽보 등 홍보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 (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사용료	기본사용료 (1일 1회)	월 회원	강습회원	비 고
수 영 장	어린이	2,000	30,000	(주2회)40,000 (주3회)44,000 (주5회)50,000	- 어린이 : 초등학교 이하 - 청소년 : 중·고등학교 - 성 인 : 20세 이상	
	청소년	3,000	40,000	(주2회)56,000 (주3회)60,000 (주5회)86,000	- 월회원이라 함은 자유수영을 1개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성 인	4,000	46,000	(주2회)56,000 (주3회)60,000 (주5회)86,000	- 강습회원이라 함은 주2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단위 수강자를 말한다.	
헬 스 장	청소년	2,000		(주6회)34,000	- 강습회원이라 함은 주 6일 운영하는 1개월 단위 수강자를 말한다.	
	성 인	3,000		(주6회)44,000	- 1일 사용시간은 1회 2시간 으로 한정한다.	
강 습 실 프로그램	어린이		(주2회)40,000			
			(주3회)44,000			
	청소년 성 인		(주2회)44,000			
			(주3회)48,000			
			(주5회)48,000			
체 육 관 프로그램	검 도	어린이	(주5회)44,000			
		청소년	(주5회)48,000			
	줄넘기	누구나	(주2회)40,000			
	탁 구 배드민턴	누구나	(주3회)44,000			
	농구, 배드민턴 등 체육 활동	청소년	1,400			- 1일 사용시간은 1회 2시간 으로 한정한다.
		성인	2,000			
체육관 대 관	체육경기	84,000			- 2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초 과사용료는 시간당 1회 기 본 사용료의 50%를 가 산하며 1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한다.	
	기 타	157,500				
비 고	1. 사용료 할증 ① 30퍼센트 할증 :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주간 사용료 기준) ② 50퍼센트 할증 : 사용료 초과시간 이용 시 2. 사용료 할인(청소년, 어린이는 할인대상에서 제외) ① 5퍼센트 할인 : 3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이용 고객 ② 10퍼센트 할인 - 6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이용 고객 - 단체이용 고객(10명 이상 동일 소속) ③ 20퍼센트 할인 -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이용 고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둔 그 자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제11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프로그램 강 습 료	월(년)사용료
개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개시 전	3일 전	전액반환	전액반환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비 고		1. 천재지변, 시설운영자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환급을 원하는 경우 전액 환급함. 2. 그 밖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규정을 준용함. 3. 할인금액은 할인된 사용료에서 기준에 따라 공제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5조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⑤ _____
(생략)
<신 설>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시설사용 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2(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경우
3.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⑦ _____
(현행과 같음)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

상태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특정 장소에 특정단체 입간판·현수막·벽보 등 홍보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호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참고자료]

관계법령 검토와 발채사항

관련법령	“해당 없음”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 인천광역시 내 군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비교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의안번호 제2019-483호, 제2020-250호

[관련자료]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기 간		1인당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수영장	도원수영장	1회 3시간		일반 4,000 군인· 청소년 3,000 어린이 2,000	일반 3,600 군인· 청소년 2,500 어린이 1,800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단, 육련국제사격장은 10인 이상)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동일일 기준) * 테니스장은 코트당 기본 4명을 기준으로 이용료 적용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가좌테니스장		1회 1시간 (실내코트)		일반 5,000 군인· 청소년 4,000 어린이 2,800	일반 4,000 군인· 청소년 3,200 어린이 2,200	
		1회 1시간 (실외코트)		일반 2,500 군인· 청소년 2,000 어린이 1,400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600 어린이 1,100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주간		일반 1,500 군인· 청소년 1,000 어린이 600	일반 1,200 군인· 청소년 700 어린이 500	
		야간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500 어린이 1,000	일반 1,500 군인· 청소년 1,000 어린이 600	
수봉양궁장		1회 2시간		2,100	1,400	
수봉궁도장		1회 2시간		1,400	1,000	
인천국제벨로드롬		1회 1일		일반, 학생 7,000, 5,000		
다목적운동장	정규코트	1 회	주간	1,000	3,000	
		1시간	야간	1,500	4,500	

시 설		사용구분	1인당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체육관	송림체육관	1회 3시간	일반	일반	*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 공촌유수지체육시설(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컬레당 3,000원(모든 종류), 연마료는 1족당 3,000원(스피드), 4,000원(피겨·하키) * 다목적 실내체육관 단체는 동일소속팀 20명 이상
	계양체육관		3,300	2,600	
	군인·		청소년	청소년	
	강화고인돌체육관		2,200	1,800	
	선학체육관		어린이	어린이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1,100	900	
	장애인체육관	1회 2시간	일반	일반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2,000	1,600	
	군인·	1회 3시간	청소년	청소년	
	문화박테환수영장		1,400	1,100	
	어린이	1회 3시간	800	600	
	송림체육관		일반	일반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5,000	4,000	
	군인·	1회 1시간(실내코트)	청소년	청소년	
	열우물테니스경기장		4,000	4,000	
	어린이	1회 1시간(실외코트)	3,000	2,400	
	일반		2,500	2,000	
	군인·	1회 2시간	청소년	청소년	
	열우물스쿼시경기장		2,000	1,600	
	어린이	1회	1,400	1,100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일반	일반	
	학생	1회 3시간	7,000	5,6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5,000	4,000	
	일반	1회 3시간	4,000	3,200	
	군인·		청소년	청소년	
	3,500	1회 3시간	어린이	어린이	
	3,000		2,800	2,400	

시 설		사용구분	1인당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잔디 구장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1회 3시간	일반 3,3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100	일반 2,600 군인· 청소년 1,800 어린이 900	* 파크골프장 장비대여료는 1,100원	
	계양아시아드 양궁장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					
	선학하키경기장					
파크골프장		1회 2시간	일반 2,200 군인· 청소년 1,100 어린이 1,100	-		
		월회원			일반 44,000 군인· 청소년 22,000 어린이 22,000	

시 설		사용구분	1인당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1시간	4시간	1시간	4시간		
육권 국제 사격장	10M	소총, 권총	3,000	8,000	2,400	6,400		
	25M	권총/ 스탠다드/ 센터파이어	6,000	17,000	4,800	13,600		
		속사 (0.5조 5사대)	11,000	33,000	8,800	24,000		
	50M	소총, 권총	6,500	21,000	5,200	16,800		
	10M 러닝타겟	소총	3,500	8,000	2,800	6,400		
	스크린사격장	1종목당	일반 2,000 청소년·어린이 1,500	일반 1,500 청소년·어린이 1,000				

□ 연수구 체육시설 이용료

1. 동춘다누리 체육센터 사용료 등(제8조 관련)

○ 대관사용료

구 분	사 용 기 준		비 고
토	시간	1일(09:00 ~ 18:00)	
	사용료 (원)	연수구민	관외사용자
		100,000	200,000

○ 일일사용료

대 상	사용기준	사용료 (원)		비 고
		연수구민	관외사용자	
전 연령	3시간(1인)	1,000	2,500	

2. 송도체육센터 사용료 등(제8조 관련)

○ 프로그램 수강료

강좌	구분	주5회	주4회	주3회	주2회	주1회	비 고
수영 강습	성인	70,000/63,000	65,000/59,000	60,000/54,000	55,000/50,000	50,000/45,000	기본가격 / 연수구민 할인가격
	청소년	60,000/54,000	55,000/50,000	50,000/45,000	45,000/40,000	40,000/36,000	
	어린이	55,000/50,000	50,000/45,000	45,000/40,000	40,000/36,000	35,000/32,000	
아쿠아 로빅	성인	67,000/60,000	62,000/56,000	57,000/51,000	52,000/47,000	47,000/42,000	
	청소년	57,000/51,000	52,000/47,000	47,000/42,000	42,000/38,000	37,000/33,000	
자유수영	성인	50,000/45,000					1일 1회
	청소년	40,000/36,000					
	어린이	35,000/32,000					
·피트니스 ·생활체육 ·문화강좌	공통	50,000/45,000	45,000/40,000	40,000/36,000	35,000/32,000	30,000/27,000	문화강좌 재료비 본인부담
헬스	구분	주5회			퍼스널 트레이닝 (월10회)		퍼스널 트레이닝 헬스장 이용료 포함
	성인	45,000/40,000	1:1	1:2(1명당)		1:3(1명당)	
	청소년	35,000/32,000	400,000	300,000		200,000	

※ 기본가격/ 연수구민 할인가격,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을 적용함.

※ 기타 감면은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함.

※ 재료비 및 소모품 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음.

※ 어린이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 청소년은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함.

○ 시설대관 사용료

구 분	사 용 기 준(1시간)		비 고
다목적체육관		30,000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료의 20% 가산 ·부대시설사용료는 대관료 합산 징수
다목적 체육관 부대 시설	조 명	기본료 20,000 + (부하의 최대용량 * 사용일수 / 30) + 실제전기사용요금	
	냉·난방	기본료 30,000 + 부하의 최대용량 * 사용일수 / 30 + 실제전기사용요금	
	마이크 (음향시설)	10,000	
	프로젝터	30,000	
	음악장비	10,000	
문화강좌실		20,000	
풋살장		20,000 (조명 10,000)	

○ 일일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원)		비 고
수영장	1일 1시간	성인	4,500/4,000	기본가격 / 연수구민 할인가격
		청소년	4,000/3,500	
		어린이	3,500/3,000	

※ 기본가격/ 연수구민 할인가격, 연수구민 확인 시 할인가격을 적용함.

※ 기타 감면은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함.

※ 어린이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 청소년은 중·고등학생, 성인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함.

○ 기타수수료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 (원)	비 고
개인사물함	대형	10,000원	1개월 사용료
	소형	5,000원	

3.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시설명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축구장	평일	2시간	30,000	야간 조명 사용료 별도 (시간당 11,000원)
	주말 및 공휴일	2시간	50,000	
풋살장	2시간(1구장)		15,000	
배드민턴장	3시간(1인)		1,000	2,500
	월 회비(1인)		20,000	35,000
	단체(30인 이상) 월 회비		13,000	25,000
테니스장	2시간(코트당)		5,000	10,000
	월 회비(1인)		15,000	30,000
	단체(20인 이상) 월 회비		10,000	20,000

]

□ 서구 체육시설 이용료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제11조 관련)

1. 수영장사용료

(단위:원)

구 분		사용료	비 고
어린이(초등학생이하)		2,000	○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 이고, 인솔자에 의해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회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청소년(중·고생)		3,000	
성 인		5,000	
단 체	어린이	1,500	
	청소년	2,500	
	성 인	4,000	
월 회 원	어린이	28,000	
	청소년	33,000	
	성 인	42,000	
강습회원	어린이	38,000	
	청소년	44,000	
	성 인	52,000	

2. 체력단련실

(단위:원)

구 분		사용료	비 고
청소년		1,000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 를 말함. ○ 샤워장 사용료 포함.
성 인		2,000	
월회원	청소년	25,000	
	성 인	35,000	

3. 체육관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사용료	비 고
어린이(초등생이하)	700	○ 사용료는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1회 대관은 별표1의 조기,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하며,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청소년(중·고생)	1,200	
성 인	1,500	
체육관 대관	80,000	

4. 교육 수강료

가. 문화프로그램

(단위:원)

구 분	수강료	비 고
문화프로그램	20,000	○ 재료비는 별도 본인 부담 ○ 1주 2회 이상(1회1시간) ○ 4주를 1개월로 봄 ○ 1개월, 1명 기준

나. 체육프로그램

(단위:원)

구 분		수강료	비 고
탁구,우슈 검도,태권도 농구,기타	어린이	30,000	○ 주5회(월~금) 운영의 1개월 강습 (1일1회 1시간 기준, 단 배드민턴은 1일 1회 2시간 기준) ○ 샤워장 사용료 포함
	청소년	35,000	
	성 인	40,000	
배드민턴		33,000	
에어로빅		33,000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

-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 2)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 3) 2종목 이상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 4) 3개월 이상 장기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 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 공고 제2020-52호

제268회 남동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조성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268회 남동구의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0년 10월 7일(수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남동구의회 본회의장

2020년 9월 28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임 애 수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92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0. 10. 13.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0. 9. 28. ~ 2020. 10. 12.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유통전문판매업	2015-0199087	쿡쿡차차	아**	석촌로14번길 3, 지1층(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7-12-31	2020-10-13
유통전문판매업	2016-0199108	간지우동	장**	경인로613번길 40, 2층(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1-07	2020-10-13
유통전문판매업	2016-0200354	(주)씨엘아이 앤씨	최**	예술로172번길 9, 902호(구월동, 룩소르빌당)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06-30	2020-10-13
유통전문판매업	2019-0202297	웅이가F&D	김**	음실로 95, 1층(운연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5-01	2020-10-13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2019-0202415	레몬비 래미안자이점	김**	석산로 166,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상가2동 102호(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3-19	2020-10-13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0. 10. 12.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3

2020년 9월 28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52호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 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20. 9. 28.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첨부문서 참조”

2020년 9월 25일

남 동 구 청 장

[첨부]

-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을 위한 -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 계획

- ❖ 신규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과밀화된 남동구 논현고잔동 해당 통을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거 조정하여,
- ❖ 형평성 있는 세대수 배분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추진

1.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획정기준)

반은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통은 2~8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 2(통·반의 개편)

동장은 전출·입 등 변동사항에 따른 통·반의 세대수가 통·반의 획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1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정기준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 통·반 획정기준 적용
 - 반 : 30내지 100세대,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통 : 2~8개 반으로 구성,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정 가능

3. 조정사유

- 신규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세대수 급증 과대 통 구역조정
- 각 통간 형평성 있는 세대수 기준으로 배분 추진

4. 조정내역

- 총괄내역

구 분	조 정 전		증 감		조 정 후	
	통	반	통	반	통	반
남 동 구	878	3,775	+1	-	879	3,775
논현고잔동	44	190	+1	-	45	190

- 조정내역

구 분	조정대상(현행)		조 정 후		증감현황	
	통	반	통	반	통	반
합 계	1개통	8개반	2개통	8개반	+1	-
논현고잔동	33통	1~4반	33통	1~4반	-	-
		5~8반	45통	1~4반	+1	-

통·반구역조정현황

▷ 승인 일자 : 2020. 9. 25.

구분 동명	현행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계	878	3,775	1	0	879	3,775	
구월1동	48	189	0	0	48	189	
구월2동	49	211	0	0	49	211	
구월3동	61	220	0	0	61	220	
구월4동	36	171	0	0	36	171	
간석1동	43	202	0	0	43	202	
간석2동	35	155	0	0	35	155	
간석3동	54	217	0	0	54	217	
간석4동	45	215	0	0	45	215	
만수1동	44	176	0	0	44	176	
만수2동	42	157	0	0	42	157	
만수3동	39	132	0	0	39	132	
만수4동	43	211	0	0	43	211	
만수5동	33	184	0	0	33	184	
만수6동	41	185	0	0	41	185	
장수서창동	32	121	0	0	32	121	
서창2동	53	183	0	0	53	183	
남촌도림동	44	193	0	0	44	193	
논현1동	46	248	0	0	46	248	
논현2동	46	215	0	0	46	215	
논현고잔동	44	190	1	0	45	190	

남동구 고시 제2020-15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그 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일

가. 허가번호 : 제 2020 - 1호

나. 허 가 일 : 2020년 9월 28일

2. 점용·사용의 목적

가.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해양테크 및 부인교 전망대 설치)

나. 해양테크 및 부인교 전망대 설치를 위한 오탁방지망 및 공사용 가도 설치(일시점용)

3. 점용·사용의 장소 :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습지생태공원 남측부 공유수면(논현동 1-19번지 인접)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사용료

가. 면 적 : 2,304.7㎡(직접 2,304.7㎡, 간접 -㎡)

※ 일시점용(오탁방지망 및 공사용 가도) A=16,576.4㎡

나. 기 간 : 허가일로부터 15년

※ 일시점용(오탁방지망, 공사용 가도) : 허가일로부터 ~ 2021. 10. 31일까지

다. 사용료 : 면 제

5. 점용·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가. 성명 : 인천광역시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6. 기타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공영개발과 (☎032-453-8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